



[서식 제2호]

## 위 임 장

<b>위 임 장</b>				
위 임 자 (확진자 또는 격리자)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전화번호	
위 임 명	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의 건			
위임 받은 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전화번호	
	위임자와의 관계			
<p>상기 본인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신청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위임 받은 자에게 위임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>위 임 자 : (서명 또는 인)</p> <p>위임 받은 자 : (서명 또는 인)</p>				

210mm×297mm, 일반용지(60g/㎡, 재활용품)

## 유급휴가(공가 등) 미제공 확인서

(민간 사업장, 공공기관 공통)

사업주	성명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	전화번호
근로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입원·격리기간 (근로자)	입원·격리시작일	입원·격리해제일

우리 기관은 위 근로자의 입원·격리기간 동안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나 감염병과 관련된 유급휴가(공가 등)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.

\* 향후 위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기관(업체)명 : (직인)

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 안내**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,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입원·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, 그 밖의 입원·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중복지원 불가)

**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**

신청자격 : 코로나19로 입원·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
\*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(연차 유급휴가)에 따른 유급휴가(연월차)는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

지원제외 대상 입원·격리자

- ① 「감염병예방법」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·격리자
- ② 해외입국 격리자
-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
- ④ 입원·격리자 본인이 국가·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
  -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제2조제1호 가~다,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
  - \* 다만, 제1호 단서규정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 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 법인인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
  - 「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
- ⑤ 대기업, 중견기업 종사자

지원금액 :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(日給) 임금 해당 금액

\* 단, 1일 최대 45,000원, 5일분까지만 지원

신청기관 : 국민연금공단 각지사

신청기간 :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

\* 단,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

신청서류 :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
 ③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
 ④ 통장사본 ⑤ 중소기업(소기업, 소상공인 포함) 확인서 등

※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바랍니다.

##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

□ 신청자격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
□ 지원제의 대상 입원·격리자

- ①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·격리자
- ② 해외입국 격리자
-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
- ④ 입원·격리자 본인이 국가·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
  -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제2조제1호 가~다,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
    - \* 다만,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 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의 대상에 포함함
  - 「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
    - ☞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(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)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'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'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

□ 지원금액 :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,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

□ 신청기관 : 주민등록주소지(외국인등록주소지) 관할 읍·면·동

□ 신청기간 :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

□ 신청서류 :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  
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

\*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(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)

※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(☎ )으로 연락바랍니다.